

(화제의 뉴스)

3.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적법

서울 종로구가 르메이에르건설이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시 소송 쟁점은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산정 기준이었는데, 종로구는 공시지가를, 르메이에르건설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특별2부는 실제 매입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 적법하다는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 ▶ [종로구 4년 소송전 '승리' 개발부담금 116억 환수 - 머니투데이 | 2012. 2. 22.](#)
- ▶ [르메이에르 개발부담금 116억원 내야 - 내일신문 | 2012. 2. 23.](#)